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16. 2. 11.
일부개정	2018. 12. 27.
일부개정	2020. 12. 24.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 처무 규정 (이하“처무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처무규정 제6조의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을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2. 24.>

③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사무처 직원 중 총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직원의 해임에 관한사항
5. 인사 정책 수립에 관한사항
6.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7.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진술권 부여)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 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심의, 결정된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인사 사항은 이사회에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

부 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